

영암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
- 사업기간 : 연중
- 대 상 : 신생아를 관내 출생신고하고, 신청일 이전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 - ※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
- 사업내용 :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분에 한하여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지역화폐 지급
 - ※ 산후조리비 : 산후조리원,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, 산후 병원진료, 산후회복 위한 의약품·한약·건강(기능)식품, 산후 운동수강료, 위생용품(유축기, 생리대 등)
- 신청기한 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(영암군보건소 또는 삼호보건지소)
 - ※ 방문시간 : 월~금(09:00~17:00) * 점심시간(12:00~13:00) 미운영
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산후조리비 지출영수증, 월출페이카드 또는 영암사랑카드번호
- 문 의 : 보건소 건강관리팀 061-470-6529

진행절차

